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3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권리로서의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안 제3조)
- 나.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3. 21 ~ 4. 10.)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3조) 중 “바를”을 “바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서울시”를 “시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u>시</u> 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 -----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u>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조(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u>
<u><신 설></u>	<u>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u> <u>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u>

현 행	개 정 안
	<p><u>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3조(적용범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u></p>	<p><u>제5조(적용범위) ----- ----- ----- ----- 바에 -----.</u></p>
<p><u>제4조 (생 략)</u></p>	<p><u>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u></p>
<p><u>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서울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u></p>	<p><u>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 시의 ----- ----- ----- ----- -----.</u></p>
<p><u>② · ③ (생 략)</u></p>	<p><u>② · ③ (현행과 같음)</u></p>
<p><u>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 ② (생 략)</u></p> <p><u>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u></p>	<p><u>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u>③ ----- 법 ----- ----- ----- ----- ----- -----.</u></p>

현 행	개 정 안
<p>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p> <p>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u></p> <p>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u>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u>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u>제8조 ~ 제10조 (생략)</u></p> <p><u>제11조(관광통계)</u> ① 시장은 <u>제4조</u>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p> <p>-----.</p> <p>-----</p> <p>-----</p> <p>-----.</p> <p>-----.</p> <p><u>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u></p> <p>① ----- 시-----</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0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u></p> <p><u>제14조(관광통계)</u> ① ----- <u>제6조</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u>홈페이지</u>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p> <p><u>제12조(재정지원) ① (생 략)</u></p> <p>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③ · ④ (생 략)</p> <p><u>제13조 ~ 제15조 (생 략)</u></p> <p><u>제16조(표창)</u>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u>제17조 (생 략)</u></p>	<p>③ ----- 시 <u>홈페이지</u>----- -----.</p> <p><u>제15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u></p> <p><u>제19조(표창)</u> ----- ----- ----- 「서울 특별시 표창 조례」----- -----.</p> <p><u>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u></p>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관광정책과 박진화 (02-2133-2808)